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훈*

요 약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제를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유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A Study on the Actual Operation Condi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and it's Improvement Plan

Sanghun LEE*

ABSTRACT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that initiated as the eligibility of private in 2006, has been requested more fulfilling management because that becomes to be recognized at the national certified qualification system in 2013.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and more exemptions, currently some are mainly police officers. Secondly, it is needed to make to announce the final successful candidates through the opposition proceedings by publishing assumptions answer of the problem and by improving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and so forth.

Key words : Private Security Guard,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System, Private Security Guard Certification Exam, Security Industry, Security

1. 서 론

21세기가 열리면서 지위가 능력인 전통사회에서 능력이 곧 지위가 되는 능력중심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7년에 「자격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하고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높여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통하여 능력을 가진 전문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성숙된 사회의 구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부터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서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다 엄중하게 요구받게 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그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과거의 순수 민간자격시대의 자격시험 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더욱이 지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 이후부터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테러에 대한 개인신변 안전대책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에는 IS(이슬람국가)에 의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국가에 대하여 전방위적 위협으로 개인의 안전보장은 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의 치안상황은 장기간의 불황과 고용불안이라는 경제적 요인과 부의 양극화라는 사회적 요인 등에 기인한 사회중요범죄와 같은 무차별적 범죄는 물론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테러리즘의 확산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의 보호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민간경비산업의 비중은 날이 증가하고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 따라서 신변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업무수행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우수한 인적자원의 수급측면에서도 동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긴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 자격제도를 통한 인적자원의 양성과 배출을 위해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및 운영의 개선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그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지난 2006년에 순수 민간자격증으로 시작한 신변

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이제 국가공인자격으로서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되고, 그 후에도 이미 3회에 걸쳐 시행된 끝에 오는 2014년 11월 8일에는 제4회 자격검정이 공고된 것¹⁾에 즈음하여, 지난 수년간의 동 자격검정 운영실태와 최근 국가공인 이후의 자격검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법제도적 요구와 민간경비산업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경호원의 전문성을 보다 확실하게 담보해 낼 수 있는 자격시험의 운영실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주관기관인 (사)한국경비협회의 자격시험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의 취지와 연혁

신변보호사 시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변보호사로 하여금 정확한 상황대처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안전한 삶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자격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신변보호사에게는 경비 및 경호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경호지식과 기술을 터득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황분석 및 경호무도 기타 경호의전 및 예절을 체득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신변보호 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경찰청의 ‘민간경비교육 기본지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수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받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인정받는 자’를 양성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경

1) 2013년 11월 25일에 제1회 국가공인 자격시험이 시행된 후, 공인 이전의 민간자격증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 14일과 2014년 3월 15일에 각각 제2회와 제3회의 재검정(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가 공인받은 자격의 취득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이 있었으며, 이를 통산하여 2014년 11월 8일에는 제4회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비협회가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과 함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1].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국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되었으며, 당시만 하더라도 취득자격에 등급을 부여하여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에 대한 검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40개 대학 805명이 응시하여 응시자 대비 94.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공인 이후에 재검정 절차를 통해 국가공인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14년 3월 15일에 실시된 재검정(국가공인 제3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이르기까지 국가공인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의 수는 492명²⁾에 달한다.

2.2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현황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에 민간자격증으로 첫 시험을 본 후 7년만인 2013년에야 비로소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제1회 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1>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운영실태

회차	시행 연도	국가 공인	접수	응시 자	합격 자	합격 륜
제1회	2006	민간 자격	821	805	763	94.8
제2회	2007	민간 자격	1,220	1,133	1,090	96.2
제3회	2008	민간 자격	1,411	1,308	1,204	92
제4회	2009	민간 자격	1,166	1,050	634	60.4
제5회	2010	민간 자격	707	622	501	80.6
제6회	2011	민간 자격	806	734	427	58.2
제7회	2012	민간 자격	861	784	534	68.1
제8회 (공인 1회)	2013	국가 공인	1,011	935	265	28.3

출처: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2014.

국가공인 제1회 시험이 시행된 2013년의 통계를 보면, 접수인원이 종전의 1천명 대를 회복하였으며 합격률에 있어서도 28.3%의 낮은 비율³⁾을 유지함으로써

2) 여기에는 2013년 11월 25일에 실시된 국가공인 제1회 시험 합격자 265명과 2013년 12월 14일에 실시된 국가공인 제2회 시험(재검정) 합격자 196명, 그리고 2014년 3월 15일에 실시된 국가공인 제3회 시험(재검정) 합격자 31명이 포함된다.

자격증의 권위와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가공인자격으로서의 최소요건에 부합하도록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난 2007년에 있었던 제2회 시험의 합격률인 96.2%의 30%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국가공인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비교된다.

2.3 선행연구의 검토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른 주제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양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숫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김계원·서진석은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신변보호사의 자질검증이나 향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첫째, 자격제도의 운영·관리체계의 체계통일성 확보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확대, 둘째,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 등을 강화하고 유인요인으로서의 제도적 지원책 강구, 셋째,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자격제도 본래 목적인 자질검증과 향상에 보다 부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2].

안황권은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고해야 하며,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나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

3)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시험에서의 합격률은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의 평균수치가 26.9%로 나타나고 있다.

김일권은 민간자격증으로 제7회까지 실시된 후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은 직후의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질적 연구에서, 시민생활안전을 증진시키고 아울러 자격 검증을 통해 전문 직능을 보유한 신변보호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7회에 걸쳐 신변보호사 자격 검정을 통해 배출된 많은 수의 자격 취득자들이 산업 현장에서의 우선적 채용 인적자원 또는 가산점 부여 등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대부분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후, 신변보호사 제도와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와 인식에 대하여 탐구한 결과로서, 첫째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들이 해당자격증의 활용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현재 동 자격증에 대해 실제 활용측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둘째 신변보호사 자격증이 중요 경호관련 자격증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증은 직능보유의 단순 평가를 넘어서 응시자가 사회공헌에 중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자신감과 전문성을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4].

정지운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 경비 자격시험을 중심으로 홍보, 참여폭, 면제과목 선정 및 범위, 수험장소, 그리고 실기과목의 무도선정상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신변보호사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 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를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5].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가공인자격검정으로 변모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제도적 취지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순수민간자격증 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검정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현행 ‘국가공인’자격증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3.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운영실태

3.1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인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응시제한으로는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이 시험 부정행위자로 당해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시험은 크게 학과(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고, 학과시험과목으로는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그리고 「경호학」으로 3과목이 지정되어 있다. 문항 수는 「민간경비론」이 20문항이며, 「경비업법」과 「경호학」은 각각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80문항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특히 이들 3개 과목은 모두 객관식 5지선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객관식 4지선다로 구성되는 국가자격시험인 경비지도사 자격시험과 비교된다. 이는 신변보호사가 경비지도사와는 달리 그 직무의 성격상 본질적으로 급박스러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문적인 신체적 동작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비록 상대적이지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수험생이 느끼는 필기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형식상으로나마 어렵게 만들었다는 측면이 지적된다.

3.2 검정의 일부면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은 경찰공무원 등의 신변보호 업무 관련 경력자에게 검정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열거되어 있다. 이들은 1차 과목에서 「민간경비론」과 2차(실기시험)를 면제받음으로써 실제 「경비업법」과 「경호학」 2과목의 학과(필기) 시험만 응시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경비지도사와 비교하여 일부면제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적 보완이 요구된다. 즉, 경비지도사의 면제대상으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임에 비추어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에는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으로 하고 있어 재직기간에 있어서 2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합당한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다. 더구나 경비지도사 시험의 일부면제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된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대상에서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어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3.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시험시간은 1차(학과시험)와 2차(실기시험)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학과시험이 3과목 80문제를 80분 동안 치르도록 되어 있는 반면, 실기시험은 2인이 1조가 되어 구분동작과 연속동작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구분동작은 5수를 검정하고 연속동작은 범인대응술 5수 및 체포연행술 5수를 각각 검정한다. 실시시험 시간은 전체 6시간 20분으로 배정되어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도가산점도 인정하여 무도 2단 및 3단은 2점을, 무도 4단 이상은 실기시험 성적에 4점을 가산하고 있다.

특히 2인 1조로 운영는 실기시험에서는 범인대응술과 체포연행술을 구분 5수와 연속 5수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때 틀린 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실시 없이 다음 술기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상대방이 되는 자는 일반 수험생이 조를 이루어 서로의 역할을 받아 주는 형식을 취한다. 만약 실기시험을 하고 있는 수험생의 동작에 대해 상대방이 제대로 약속된 자세를 취하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객관적 평가에 ‘상대방’이라는 우연한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

합격자는 1차와 2차 시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이면서 과락(1차 시험과 2차 시험에서 각각 40점 미만)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대평가 방식은 학과(필기)시험 출제위원의 출제문제의 난이도와 실기시험의 평가 점수의 편차 기타 수험생의 실력 등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서 합격생의 수가 들쭉날쭉해 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상기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총 8회의 시험에 있어서의 시험 간

합격자 수의 차이는 최대 939명으로 나타나며, 합격률 역시 시험 간 최대 67.9%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3.4 기본교육 등 기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8시간의 합격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신변보호사 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기본교육합격자 기본교육 과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교육으로 「경호(경비)계획 실무」 과목 2시간, 실무교육으로 「경호예절 및 인권과목」을 2시간, 「경호대형 및 대처요령」을 2시간, 그리고 「응급처치법」을 1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전체 교육시간 자체가 8시간에 불과해서 경비지도사의 44시간 기본교육에 비하면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기본교육을 통해 신변보호사 자격의 동질성과 전문성을 고양시킨다는 차원에서 기본교육시간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 기본교육 내용

구분	교육과목	시간
이론교육(2H)	경호(경비)계획 실무	2
실무교육(5H)	경호예절 및 인권	2
	경호대형 및 대처요령	2
	응급처치법	1
기타(1H)	입교 및 수료	1
합계		8

출처: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2014.

4.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개선방안

4.1 일부면제 규정 개선: 관련 범위 확대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된 사람’이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된 사람’은 1차 과목 중 「민간

경비론'과 2차(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경비지도사가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단순히 '1차 시험만'을 면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1차 시험의 일부과목은 물론 2차(실기)시험을 면제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사의 업무특성과 제도적 취지를 엄밀하게 고려해 볼 때, 지나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⁴⁾

우선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의 필요최소 재직기간에서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자격증인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비교해 볼 때 '2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에도 그 합리적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다.

더구나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1차 시험 면제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이를 제외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역시 그 합리적 설명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의 확산과 관련분야 종사자를 보다 넓게 인정하는 전향적 태도가 요구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신변보호(경호)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경력 상 신변보호업무와 관련성이 많아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원칙 하에서 일차적으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한정하여 현행 경비지도사의 1차 시험 면제자의 자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그리고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신변보호사 1차 시험 면제자가 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경호(신변보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⁵⁾

나아가 신변보호사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실전에 필요한 기민한 판단력과 신체적 대응능력을 증시하여야 하므로, 전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이듬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도 있다. 해당 면제자로 하여금 실기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신변보호사의 현장조치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실기시험에서의 보다 숙련된 동작과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2 합격자 결정절차의 개선: 이의신청제 실시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실시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응시자의 이의를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학과시험의 문제출제 오류나 실기시험의 평가 점수의 개인별 혹은 시험장별 편차 등 합리적 운영 미흡으로 인한 평가의 객관성 결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수 차이로 말미암아 합격여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수험생의 이의신청 등의 참여 절차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신변보호사 학과시험의 문제공개가 전제 되어야 한다. 문제공개 방식은 시험장에서 수험생이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과 시험지를 회수하되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일정한 시간 이후에 홈페이지에서 이를 공개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가 있다. 수험생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양자를 모두 수용하여 수험생이 시험지를 가져가도록 허용하고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사)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에 유형별 문제 및 정답 가안(假案)을 공개하고, 공개된 문제와 정답 가안을 수험생 자신이 문제지 등에 표시한 정답과 비교·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유사한 사례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자격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1차 시험과목의 일부과목(4과목 중 2과목)만을 면제하고 있고, 2차 시험(주관식 실무)의 면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2014. 9. 22. 검색 /http://www.koroad.or.kr/license).

5)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경우에는 1차 시험 면제와 관련하여 그 자격을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2014. 9. 22. 검색/http://www.koroad.or.kr/license).

특히 이러한 정답 가안을 통한 채점 및 확인과정에서 수험생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터넷상으로 접수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당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을 확정하여 공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정답의 최종확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제출제위원과 선정출제위원과는 별도로 동급의 이의신청문제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도 함께 운용할 필요가 있다.

4.3 실기시험 방법의 개선: 평가사범제 도입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경비지도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비해 특별하게 구별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범인대응술이나 체포연행술 등의 실기평가를 동일한 비중으로 실시한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도 실기평가의 비중이 100점으로 필기평가의 비중인 100점과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아가 1차 학과(필기)시험은 물론 2차 시험에서의 실기시험 평균점수가 40점 이하의 과락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실기평가에 있어서의 수험생 이외의 변수가 당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자격검정의 운영에 있어서 실기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가 요구된다.

그런데 시험실시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아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점이 바로 2인 1조로 진행되는 실기시험에서의 상대방이라는 변수의 상수화(constant, 常數化)이다. 실기시험 상대방의 실수나 준비 부족에서 오는 영향이 곧바로 수험생 자신의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지난 몇차례의 시험에서도 누누이 지적되어 온 게 사실이다. 더구나 틀린 술기는 재실시 없이 다음 술기로 계속 실시하여야 하므로, 술기의 대련상대를 잘못 만나는 경우에는 실기점수에서 좋은 득점을 획득할 수 없다는 외부변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수험생에게 그 책임을 모두 지게 할 수 없는 이런 종류의 변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가사범제(master, 評價師範制)라고 할 수 있다. 실기에 능한 평가사범으로 하여금 일정횟수의 실기평가에서 수험생과의 약속대련을 하게 한다면, 현재와 같은 외생변수를 어느 정도는 제거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에게 상대방이 제대로 잘 받아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상대적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줄여나가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4 합격자 결정방식의 전환: 상대평가제 도입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포함한 거의 모든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시험의 난이도 조정이라 하겠다. 난이도는 대개 시험성적 분포 내지 커트라인의 높낮이에 따라 어렵다 혹은 쉽다 정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신변보호사 시험과 같이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시험에서는 통상 전년도 대비 합격률 내지 응시자 대비 합격자 수라는 척도로 그 난이도의 경중을 가능하기도 하지만, 실제 신변보호사 시험에서 이와 같은 합격률이라는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출제위원의 개성이나 수험생의 시험준비 정도(실력)라는 객관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 때문에 예년에 비해 적절한 범위 이내에서의 의도한 평균점수를 유지하거나 목표한 합격자 수를 근사치라도 맞추는 것은 어찌하면 요행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겠다.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매 해마다 적정인원을 정하여 해당 인원을 성적 상위자부터 추려나가는 소위 ‘상대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이 40점의 과락점수를 면하고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당연히 합격한 것으로 하는 것과 대조된다. 매 해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적지 않은 변수를 지닌 채 출제의 난이도나 실기평가점수의 후박(厚薄)에만 매달리지만 말고 이를 상대평가로 정하고 신변보호사 시장의 장기적인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험 공고일까지 일정 인원으로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매년 마다 결코 만족할만한 성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은 이제부터라도 다양하고 경비지도사 자격시험과 같이 주관기관인 한국경비협회가 적정인원을 결정하여 선발인원을 공고하여 상대평가제로 당해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5 신변보호사 기본교육의 강화

신변보호사는 경비지도사에 비하여 희생정신이라고 하는 특징이 업무의 핵심요소가 되므로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이론교육에 있어서 정신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신변보호 실패에 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신변보호업무에 임하는 정신자세를 다잡는 교육과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또한 기존의 「경호대형 및 대처요령」 과목을 분리하여 「경호대형 실습」 과목과 「우발상황조치 실습」 과목으로 분리하고 교육시간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응급처치 과목도 단순한 CPR 기본교육에 머무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심폐소생술 외에도 각종 「상황별 응급처치 실습」 을 추가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과목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비지도사에 대한 교육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부재는 나날이 변화하는 신변보호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의 이수를 신변보호사 자격증 갱신의 조건으로 삼아서 지속적인 전문성 향상과 신변보호사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6 응시대상층의 다양성 확대

2006년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등급의 차이를 두어서 실시하면서 그 응시자격으로 신변보호사 2급은 4년제 대학교 시큐리티 관련학과 및 경찰 관련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이거나 신변보호사 3급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로 하였다. 신변보호사 3급은 전문대학 시큐리티 관련학과 및 경찰 관련학과 재학 또는 재학한 적이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대학생 이외의 일반인의 응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국가공인의 자격증으로서의 역할 확대 및 능력사회를 열어 가는데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제도가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인에게도 응시자

격을 확대하여 부여한 것은 타당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일반인에게 자격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일반인의 응시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유인력이 그만큼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표 3>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과는 달리 대학생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의 응시는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이 된 이후에 치러진 2013년 제1회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인의 응시인원은 전년 25명 대비 131명으로 늘어나서 424%나 폭증했으며, 종래 한 명도 응시하지 않았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래 일반인 응시인원 25명 대비 무려 232%에 달하는 83명이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표 3>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현황

회차	시행연도	국가공인 여부	총계	대학생	일반인	경찰관
제5회	2010	민간자격	707	650	57	0
제6회	2011	민간자격	734	707	27	0
제7회	2012	민간자격	784	759	25	0
제8회 (공인 1회)	2013	국가공인	935	721	131	83

출처: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내부자료, 2014.

이것은 응시대상층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가운데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기반이 대학생 등의 특정집단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일반인 모두의 자격증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며 신변보호사 자격시험 제도의 지속적 운영이라는 자격시험의 제도적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4.7 가산점 적용대상 등 자격증 활로 모색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일차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 통상 취업이나 승진에서의 가산점이 그것이 될 수 있다. 경비지도사 자격의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가산점(4점)과 승진 시 인

사고과에서 관련자격증 인정점수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헌병병과의 입직에서 있어서도 우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도는 아직까지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공군부사관 헌병병과 모집 시 신변보호사 자격증은 가산점(10점)이 부여되고 있으며, 부사관 헌병 근무연장 및 진급심사 시에도 자격증 점수(1.5점)이 부여되고 있다.

향후 경찰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대통령 경호실 채용 및 승진평가 시 가산점 부여,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학점환산 인정, 공군 이외에도 육군이나 해군 등의 각군 하사관 및 장교채용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유인책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변보호 활동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상 신변보호사의 근거규정을 설치하는 동시에, 당장에는 신변보호업무의 시설 등의 기준(경비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별표1)에 있어서의 규정인 현행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의 경비인력 최소기준을 ‘신변보호사 5명 이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각종 테러에 노출되어 있지만 정부의 보호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재외국민이나 상사주재원의 보호 기타 산업인력의 보호 등에 있어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증이 될 수 있도록 활용범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결 론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으로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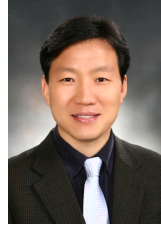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신변보호사 자격시험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와 그 개선책은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담론과 공감을 통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담보하는 데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할 것으로 본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반 노력들은 주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만의 관심사는 아니어야 하며,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법적 뒷받침과 민간경비산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일권,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3권 제2호: 46, 2013년.
- [2] 김계원·서진석, “신변보호경비원의 자질검증 강화를 위한 신변보호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2권 제1호: 24-28, 2013년.

- [3] 안황권, “신변보호사 자격제도의 필요성과 과제”,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1권 제2호: 25-33, 2011년.
- [4] 김일권, “신변보호사 자격취득 학생들의 자격활용 인식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지, 한국융합보안학회 제13권 제2호: 45-54, 2013년.
- [5] 정지운,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2006년 시험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제13호: 451-470, 2007년.

[저자소개]



이 상 훈 (Sanghun LEE)

1988년 2월 동국대 학사
1990년 2월 동국대 석사
2008년 2월 동국대 박사
현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email: shlee0044@naver.com